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1일, 이춘석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춘석의원)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오세일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의 조정 등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보장위원회 정수를 30인 이내로 규정한 취지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동수로 하여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에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과 시각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에 따라 정수를 35명으로 확대하는 경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지 못하여 균형있는 정책의 심의·조정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도 공무원에 속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기존에 ‘공무원인 위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원 임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